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1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안정적인 마을버스운송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
- 재정지원 (안 제3조부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내용

- 재정지원(안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체에게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지원대상은 금천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함.

I. 마을버스 지원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마을버스 재정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①)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재정지원금 : 연간 2억원

- 417천원 × 40대(지원차량대수) × 12개월

※ 마을버스 대당 월 평균 적자금액 : 417천원

- 지원신청(안 제4조)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음

○ 보조금 정산(안 제5조)

보조금의 정산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보조금 정산 의무를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 제정 이후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행비용 절감 노력 등 마을버스 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합리적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관리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